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30호
- 제 출 자 : 홍순목 의원 외11명
- 제 출 일 : 2018년 3월 6일
- 회 부 일 : 2018년 3월 7일

2. 제안이유

- 안산시에 거주하는 국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개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 : 월5만원에서 월7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8조 제1호 가목)
- 보훈명예수당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8조 제1호 나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1)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참고2)

○ 입법예고 결과(2018. 2. 28. ~ 2018. 3. 5.) : 의견 없음

□ 부서 검토의견

1. 조례안 내용의 상위법 저촉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소지 없으며,
-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법제처 의견제시 17-0233)

2. 조례안 시행시 예상 문제점 : 해당사항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상태이나, 특별한 기준이 없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액을 기준으로 검토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적인 인상이 우려됨.

3. 조례안 시행시 주무부서 : 복지정책과

4. 조례안 시행시 재정부담 및 예산관련 사항 : 의견 있음

- 경기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명예수당을 참작하면 참전국가유공자에게 월 7만원, 그 외 국가유공자에게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현재 예산 19억원 대비 약 9억원의 추가 비용 소요가 예상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 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마련하여 이에 따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3122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3월 2일
- 회 부 일 : 2018년 3월 7일

2.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관련,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적극적인 출산 장려
-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안산행복플러스카드 혜택을 임신부로 확대하여 임신부 배려 사회 분위기 조성
-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통하여 사회 전체의 출산 축하분위기 조성을 통한 저출산 인식 개선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3. 주요내용

- 출산 지원 확대 취지를 반영코자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 개정
- 안산 임신부 행복플러스카드 발급을 추가하여 임신부 혜택 신설 (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거주기간 단서조항 마련 및 재혼 후의 자녀 출산·입양의 경우 자녀합산 규정 명확화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출산장려금을 첫째아부터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금 상향, 지원중단 근거 신설(안 제5조 및 제5조의2)
 - 첫째 아 50만원, 둘째 아 1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넷째 아 이상 1,000만원 이내
- 모든 출산가정에 10만원 이내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설 (안 제7조의2)
- 영유아 양육비 지원 거주기간 삭제 및 지원시점 확대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1)
-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 관계법령발췌서 (붙임3)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서(붙임 4)
- 입법예고결과 : 의견 18건, 반영 18건 (붙임5)
 - 입법예고 : 2018. 1.23. ~ 2.12.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제출 18건 (반영 : 18건)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등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출산지원 확대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명을 「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자녀가정에 제공되는 안산행복플러스카드 혜택을 임신부로 확대하여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으로 출산을 축하하고, 첫째 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 범위 확대 및 지원금을 상향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율을 제고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 3125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3월 2일
- 회 부 일 : 2018년 3월 7일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상이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관계규정의 준용 규정을 명확화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1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삭제
- 제12조 제2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5항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삭제
- 행복예절관 위탁사무 관리 및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관련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과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명시(안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개정조례안 (붙임1)
-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2)
- 다. 관계법령발체서 (붙임3)

라.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마.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 행복예절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위탁의 취소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과 상이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 관련법령의 준용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복예절관 위탁사무 관리 및 운영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121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3월 2일
- 회 부 일 : 2018년 3월 7일

2. 대상사업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가 제안이유

- `13년 3월부터 아이러브맘카페(1호점)가 운영되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이용 수요가 많아 보육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함.
-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등으로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지원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 아이러브맘카페 1호점 현황 ▶

- 시 설 명 : 아이러브맘카페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249(구 호수동주민센터)
- 면 적 : 297㎡
- 개 소 일 : 2013. 3.
- 운영방법 : 민간위탁
 - 운 영 자 :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강보경)
 - 위탁기간 : '17.10.01. ~ '20.09.30.
 - 운 영 비 : 231,500천원
 - 종사인력 : 4명(보육전문요원 1명, 운영요원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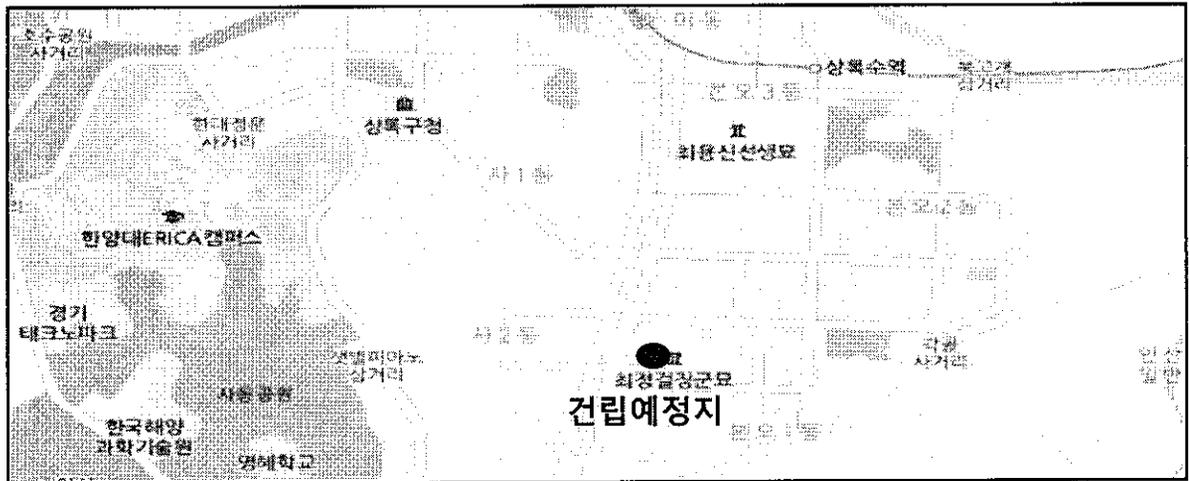
3. 주요내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사업
- 위치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
- 사업기간 : 2016. 8. ~ 2019. 12.
- 소요예산 : 1,659백만원
- 건립규모 : 대지면적 920㎡, 연면적 650㎡ / 지상 1층 ~ 지상2층
- 주요시설

층		면적(㎡)	용도	비고
실내	1층	250	장남감 및 도서대여실, 사무실, 기계실	
	2층	400	놀이실, 상담실, 시간제보육실, 육아공동나눔터, 자료실 등	
실외		16면	부설주차장	

○ 위치도



□ 추진사항 및 계획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 계획 수립 : 2016. 8.
- 공유재산취득심의(회계과) 완료 : 2016. 8.
- 경기도 의원과의 정책간담회 실시 : 2017. 8.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계획(변경) 수립 : 2017.10.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건립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 2018. 3.
-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18. 4.
- 2018년 2회 추경 예산 확보 : 2018.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18. 9.
- 공사 착공 및 준공 : 2019. 2. ~ 2019.12.
- 아이러브맘카페(2호점) 개관 : 2019.12.

4. 검토의견

- 아이러브맘카페 2호점은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에 시설 설치 근거가 있으며,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지원시설로 상록구 본오동 940번지 어린이공원 일부를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여 대지면적 920㎡, 건물 연면적 650㎡ 지상2층 규모로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되며,
- 현재 단원구 지역에서 2013년 3월부터 운영중인 아이러브맘 카페1호점은 연간 이용자가 35,000명에 이르는 등 이용률과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보육시설의 추가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 육아공동나눔터, 놀이공간, 시간제 보육, 육아정보 제공, 장난감 대여 사업 등으로 One-stop 육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를 위한 복지지원 시설을 상록구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이나
- 총사업비 16억5천9백만원이 전액 시비로 건립예정이므로 도비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에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가칭)시립안산군자어린이집, (가칭)시립빼아제어린이집]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123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3월 2일
- 회 부 일 : 2018년 3월 7일

2.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환으로 매입 및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군자어린이집(가칭: 시립안산군자어린이집)과 빼아제어린이집(가칭: 시립빼아제어린이집)에 대하여 운영을 맡을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운영 대상시설

어린이집명	소재지	보육 정원	보육 교직원	연면적	위탁기간	비고
(가칭) 시립안산군자	단원구 화정로 9 (선부동)	56	10	242m ²	19.03.01~ 24.02.29.	
(가칭) 시립빼아제	상록구 감골2로 11 501동 101호 (사동, 에누림)	20	6	217m ²	18.09.01~ 23.02.28.	

○ 보육아동현황

(2018. 2월 기준)

어린이집명	구분	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장애아
(가칭) 시립안산군자	반수	6	1	1	1	1	1	-	1
	현원	51	3	6	7	15	17	-	3
(가칭) 시립빼아제	반수	4	1	2	1	-	-	-	-
	현원	19	3	10	6	-	-	-	-

- 2017 세입·세출예산 규모
 - 시립안산군자 : 442,659천원
 - 시립빼아제 : 227,181천원
- 위탁기간 : 5년 이내 / 단, 「안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위탁 가능(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

○ 심사결정방법

- 적격성 확인 : 위탁운영신청자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 선정방법 : 안산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 거쳐 시장이 결정
- 심사기준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표준안 참조(※ 필요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조정가능)

심사항목	항목별 점수
1. 어린이집 운영계획	40
2.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35
3.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10
4. 운영체의 공신력	10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합 계	100

- 심사결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70점 이상의 최다득점을 받은 신청자를 운영자로 선정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계산)
 - ※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 실시

- 동점자 처리 : 순위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1순위 : 어린이집 운영계획
 - 2순위 : 운영체의 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 3순위 :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 결과공개 : 안산시청 홈페이지 결과 공개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22조(위탁운영)

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 어린이 보육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증진의 역할을 수행함.
- 어린이집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하여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이며, 또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운영이 타당함.

마. 예산 현황 : 민간위탁예산 없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최근 출산율 저하 및 영·유아수 감소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선정절차를 거쳐 매입하여 시립전환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 최근 출산율 저하로 국가의 장래가 불투명한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부모들이 걱정을 덜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가 가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 시립 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서 운영하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양질의 보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직영보다는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임.
- 시는 향후에도 영유아가 좋은 여건에서 보육이 될 수 있도록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의안번호 : 제3127호
-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 출 일 : 2018년 3월 2일
- 회 부 일 : 2018년 3월 7일

2. 제안이유

-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이 2018. 8. 31.자로 만료됨.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관련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사업

- 시설현황
 - 위 치 :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초지동)
 - 시 설 장 : 박 상 호
 - 규 모 : 연면적 2,940.67㎡(890평) 지하1층 ~ 지상3층
 - 사용승인 : 1999. 05.(개관일 1999. 4. 21)
 - 주요시설 : 장애인전용목욕탕,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수치료실, 다목적실 등
- 주요사업
 - 상담관리사업 : 재활상담, 진단·판정사업, 사례관리

- 아동·청소년사업 : 기초재활서비스, 사회적응훈련, 교육재활 등 6개사업
- 성인사업 : 직업훈련실, 지원고용, 가족지원, 동아리사업, 공동생활가정 등
- 장노년사업: 상담, 스포츠, 동아리사업 등 12개사업
- 기획운영사업 : 후원, 조사연구, 지역사회연계 등 6개사업

○ 운영주체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 대표 : 홍정길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길 34 하늘오피스텔 201호(수서동)
- 수탁기간 : 2015. 9. 1. ~ 2018. 8. 31.(3년, 재계약)

나. 주요위탁내용

- 위탁대상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위탁기간 : 2018. 9. 1. ~ 2028. 8. 31.(10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안산시장애인복지관(부설 포함) 운영·사업 일체
- 위탁예산 : 2,145,833천원(2018년 본예산 기준)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 1,732,000천원
 -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 360,575천원
 - 아릅드리공동생활가정 : 53,258천원

다. 민간위탁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 제5조
-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라. 민간위탁의필요성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이 필요하므로 장애인 관련 민간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이 효율적임.

마. 예산조치 : 2018년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 완료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8. 8.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민간전문기관(단체)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에 대하여는 장애인의 상담 및 교육·의료 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다양한 기관과 네트워킹 능력이 요구됨을 고려할 때,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장애 유형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수탁 기간 5년간의 실적을 단순하게 수적·양적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성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장애인복지관 역할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